

[별표]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관리지침 참조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예)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 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14급 이상이 예상될 시 피해대상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주민등록부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 외국인도 복구대상에 포함 ※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불법체류자 확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대상에서 제외 ※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장례비 별도 지원 ※ 공무원, 군인 등은 업무와 관련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 시 구호금을 지급 ○ 부 담 륜 : 지원 10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나. 이재민 구호		
(1)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소파·반파·전파·유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2) 장기구호	○ 주택이 침수·소파·반파·전파·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 생계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세입자 보증금을 지원 받는 전·월세임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주택 침수·소파 : 7일간 구호비 - 주택 반파 : 30일간 구호비 - 주택 전파·유실 : 60일간 구호비 ※ 최초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1인 1일당 지원기준지수 지급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다. 농업·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지원		
(1) 생계 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지수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1호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을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생계지원 금액×지원율 / 1,000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업,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와 주택 유실·전파·반파 피해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 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동일 재해에 한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지원기준지수 = 교육비 단가×지원율 / 1,000 ○ 지원금액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고시)의 교육비 지원단가를 적용 ※ 1학기(6개월분)에 한정하여 지원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교육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 업 장 에 재해를 입은 소 상 공 인 의 생 계 안 정 을 위한 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안정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 * 재난으로 소상공인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 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를 말함 - 피해액은 영업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은 제외 - 재해 소상공인이 제시하는 피해액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 지원대상 제외업종 :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 별도지원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하는 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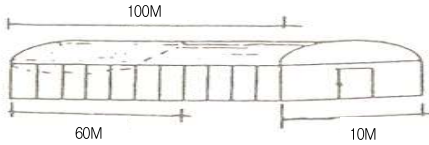
2. 사유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확 인 사 항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동일세대의 중복 신고여부 확인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타 시·군·구 신고 및 세대당 5천만원 초과여부 확인 ○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는 손해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 보험금 지급 ○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의견금 및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조사 실시 및 NDMS 등록 ○ 주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세무서 등 근로소득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 시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적극 유도(방문설명 등) ○ 주택 유실·전파·반파·소파 피해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까지 지원.	
가. 주택복구		
(1)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주택 침수도 동일 적용 ※ 피해조사 시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피해구분: 전·반파 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의 전파 적용피해> · 기둥·벽체·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 ·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 - 반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의 반파 적용.피해> · 기둥·벽체·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건축법」 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원기준지수: 피해주택의 면적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주택파손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주택파손 단가×지원율 / 1,000 ○ 반파·소파·침수 주택의 이축·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및 용자금 전액 지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주택 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 영리시설은 제외 ※ 피해발생 시·군·구 내의 주택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용자비율(60%)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하고,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시·군·구 사후 확인 필요) ○ 부 담 륜 - 내진설계 반영 : 지원 30%, 용자 70% - 내진설계 미반영 : 지원 30%, 용자 60%, 자부담 10%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관사 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 ※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세입자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워 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 주택침수도 동일 적용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 소유자(실거주),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의연금 지원은 이사 여부와 무관 ※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	
(2)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중 수전 설비 교체비용 요령에 따름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의연금 지원은 이사 여부와 무관 ※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	○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침수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주택침수 단가×지원율 / 1,00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 영리시설은 제외 ※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함 ※ 가족 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 부 담 료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3) 주택소파 (지진피해에 한정)	○ 소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피해> • 폭 2mm(500원 동전이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 길이 2m 이상의 벽체 균열이 발생한 경우 • 출입문이 틀어져 개폐가 되지 않아 교체하지 않으면	○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소파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주택소파 단가×지원율 / 1,00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안되는 경우 - 창문틀이 떨어지거나 뒤틀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지붕재(기와 등) 탈락으로 2㎡ 이상을 재설치 하는 경우 <제외대상> -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 타일 탈락, 장식용 대리석 파손,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 본 건물 외 안테나시설, 방범시설, 태양광(열)시설 등 부속물 파손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견금 지급을 위해 조사 필요 ※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견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견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견금 미지원 ○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 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 영리시설은 제외 ※ 소유자에게 지급 ※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수리하지 않고 재피해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부 담 륜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4) 세입자 보조	○ 주택이 반파·전파 또는 유실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보증금의 경우 임대료가 없는 전세보증금도 포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부모의 집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 피해 조사 시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세대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안부 고시)」의 세입자 보조 단가 범위 내 실제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재난지수로 환산한 지수 적용 ※ 지원기준지수 = 세입자보조 단가×지원율 / 1,000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 예시>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200×6개월=1,200 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300×6개월=1,800 적용 - 보증금 없이 월10만원 세입자 ⇒ 100×6개월=600 적용 -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있는 세입자 ⇒ 보증금×자금조달비용지수(코팩스 신규취급액)×6개월 적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호에 따라 주택 보증금의 이차 등을 지원 받은 경우 6개월분 지원액을 공제하고 지급 ○ 부 담 륜 : 지원 10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5) 마을기반 조성	○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 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 이축비는 전파주택 기준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부 담 료 - 국고 50%, 지방비 5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나. 농경지 복구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 : 매몰심도 10cm 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 : 유실깊이 10cm 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농경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 임차인(실경작자)의 주생계수단 확인	○ 유실·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적용 ※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의견이 다른 경우 당사자간 협의·결정하여 지급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재난지수 산정 : m² 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 : 매몰면적(m²)×(지원기준지수) - 유실 : 유실면적(m²)×(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 복구비 : 국고 50%, 지방비 50% ○ 부 담 료 - 지원60%, 용자30%,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가) 비닐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조제5호 준용 : 시설물을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 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축산포함)을 하지 않는 농·축산시설 등 농업용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표준설계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표준설계규격 : 농촌진흥청에서 농가보급·지도형으로 개발·보급한 하우스 시설규격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온실포함) 전체 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 예시	○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한 「원예특작 시설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 ○ 유리온실은 파손된 유리면적만 산정하여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m²)×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부 담 료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면적=60m×10m=600m² 주의) 100m×10m=1,000m² 아님 - 전파 : 피해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피해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나) 인삼재배 시설	○ 유실·매몰·전파·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표준설계규격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한 인삼재배시설 규격 ○ 시설형태별의 A형, B형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 : 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 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 부분 면적만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한 「원예특작 시설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 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부 담 륜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다) 버섯 재배사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 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 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륜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라) 과수재배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준영구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재난지수 산정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시설의 종류 :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비가림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륜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 기계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부 담 륜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바) 농산물 건조시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반파로 구분 조사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물량(톤)× 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부 담 륜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사) 시설 하우스 설비	○ 재난으로 인한 설비 피해에 대하여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 - 전파 : 설비가 70% 이상 파손 및 유실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대)×감가상각률×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매몰· 침수되어 새로 구입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설비가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 침수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감가상각률×종류별 단가 (반파는 1/2적용) - 경년감가율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률 산정 ※ 경년감가율 10%, 내용연수 8년 (단위 : %) <table><tr><td>구분</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d>5년</td><td>6년</td><td>7년</td><td>8년</td><td>9년</td><td>10년</td></tr><tr><td>감가상각</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d>30</td><td>20</td><td>20</td><td>20</td></tr></table>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감가상각	90	80	70	60	50	40	30	20	20	20	○ 설비 종류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른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감가상각	90	80	70	60	50	40	30	20	20	20																																																
아) 농기계	○ 재난으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대하여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 - 전 파 : 농기계가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 침수되어 새로 구입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농기계가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 침수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감가상각률×종류별 단가 (반파는 1/2적용) - 경년감가율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률 산정 ※ 트랙터, 건조기 : 경년감가율 3%, 내용연수 12년 콤바인, 이앙기 : 경년감가율 5%, 내용연수 8년 그 외 기종 : 경년감가율 5%, 내용연수 7년 (단위 : %) <table><tr><td>구분</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d>5년</td><td>6년</td><td>7년</td><td>8년</td><td>9년</td><td>10년</td><td>11년</td><td>12년</td><td>13년</td></tr><tr><td>트랙터 건조기</td><td>70</td><td>67</td><td>64</td><td>61</td><td>58</td><td>55</td><td>52</td><td>49</td><td>46</td><td>43</td><td>40</td><td>35</td><td>35</td></tr><tr><td>콤바인 이앙기</td><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d>45</td><td>40</td><td>35</td><td>35</td><td>35</td><td>35</td><td>35</td><td>35</td></tr><tr><td>그 외</td><td>70</td><td>60</td><td>55</td><td>50</td><td>45</td><td>40</td><td>35</td><td>35</td><td>35</td><td>35</td><td>35</td><td>35</td><td>35</td></tr></table>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트랙터 건조기	70	67	64	61	58	55	52	49	46	43	40	35	35	콤바인 이앙기	70	65	60	55	50	45	40	35	35	35	35	35	35	그 외	70	60	55	50	45	40	35	35	35	35	35	35	35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대)×감가상각률×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농기계 종류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른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트랙터 건조기	70	67	64	61	58	55	52	49	46	43	40	35	35																																													
콤바인 이앙기	70	65	60	55	50	45	40	35	35	35	35	35	35																																													
그 외	70	60	55	50	45	40	35	35	35	35	35	35	35																																													
자) 표고 머싯재배 시설	○ 시설은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표고재배사(툽밥배지 표고양묘)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재배사 : 피해면적×표고 재배사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른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 표고재배시설 신규모델규격('10년 이후 규격 모두)에 맞지 않은 시설은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검색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제목 체크 후 "표고재배" 검색)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누락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 조치하여야 함	
차) 대추비가림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로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 내재해형 시설로 지자체 보조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 ※ 누락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 조치하여야 함	○ 재난지수 산정 - 대추비가림 : 피해면적×대추비가림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륜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카) 유의사항	○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 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농작물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품목별 단가 ○ 피해조사 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 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 시 우선 잠정 보고하고, 재난피해조사단의 피해 확정 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보고 ○ 농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누락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 조치하여야 함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보리 등 일반작물 : 일반작물 지원기준지수 적용 ○ 채소 : 과채류, 엽근채류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 : 묘삼기준 연근별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② 농약대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부 답 률 ① 대과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 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나) 산림작물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품목별 단가 ○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 분재는 포지 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 누락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 조치하여야 함	① 대과대 ○ 산림작물을 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산림작물별 지원기준지수 - 표고자목 : 종균대 및 자목대 - 잔디 : 파종생산비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 분재, 밤, 대추, 뽕은감, 호두, 은행, 약용류, 복분자, 머루, 다래 : 지원기준지수 - 야생화 :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 산양삼, 약초류 : 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표고톱밥배지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② 농약대 ○ 산림작물의 낙과·낙엽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병해충방제별 지원기준지수 - 병해충방제(산채류) - 병해충방제(수실류) -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 병해충방제(약용류) - 병해충방제(야생화) - 병해충방제(표고버섯) ○ 부 답 률 ① 대과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 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 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 축사종류 : 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른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축사설비	○ 재난으로 인한 설비 피해에 대하여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 - 전파 : 설비가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침수되어 새로 구입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설비가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침수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감가상각률×유형별 단가 (반파는 1/2적용) - 경년감가율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률 산정 ※ 경년감가율 10%, 내용연수 8년 (단위 : %) <table><tr><td>구분</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d>5년</td><td>6년</td><td>7년</td><td>8년</td><td>9년</td><td>10년</td></tr><tr><td>감가상각</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d>30</td><td>20</td><td>20</td><td>20</td></tr></table>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감가상각	90	80	70	60	50	40	30	20	20	20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대)×감가상각률×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설비 유형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른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감가상각	90	80	70	60	50	40	30	20	20	20														
(3) 축사부대 시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 : 한육우, 젓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실제 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 :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 조사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항은 측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피해면적×분뇨처리시설지원 기준지수 ○ 부 담 른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4) 초지 유 실 · 매 물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매몰 피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 ○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 임간초지)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피해단가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른 - 용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5) 잠실 파 손 · 유 실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된 잠실로써 반파는 건물 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잠실의 종류별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1/2 적용) ○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 조사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른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6) 가축입식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 등 피해를 대상 - 피해액 산정 : 피해물량×가축별 입식비	○ 재난지수 산정 - 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 지원기준지수 ※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가축 폐사 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 가축 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 촬영 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 확인조서 작성 - 현지 조사 시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 : 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 : 한우, 젓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엽, 종축엽,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	○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육성가축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축 종</th><th colspan="2">육 성 축 기 준</th></tr> <tr> <th>일(월)령</th><th>체 중</th></tr> </thead> <tbody> <tr> <td>소</td><td>12개월령이상</td><td>250kg이상</td></tr> <tr> <td>돼 지</td><td>120일령이상</td><td>60kg이상</td></tr> <tr> <td>육 계</td><td>20일령이상</td><td>600g이상</td></tr> <tr> <td>산란계</td><td>70일령이상</td><td>850g이상</td></tr> </tbody> </table> ※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사양관리기록부 미비 시) 확인 ○ 부 담 른 - 지원50%, 용자30%, 자부담2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12개월령이상	250kg이상	돼 지	120일령이상	60kg이상	육 계	20일령이상	600g이상	산란계	70일령이상	850g이상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12개월령이상	250kg이상																	
돼 지	120일령이상	60kg이상																	
육 계	20일령이상	600g이상																	
산란계	70일령이상	850g이상																	
(7) 누에 유실·폐사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물량×누에 입식비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kg)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 농가, 공급시기, 공급량 등 확인 후 피해량 산정	○ 재난지수 산정 - 유실 또는 폐사량(kg)×봄·가을누에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른 - 지원50%, 용자30%, 자부담2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마. 어선 및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유실	○ 조사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전파 및 반파된 어선 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신고를 필하였거나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장(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재난지수 산정 - 피해 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어선은 제외 ○ 어선 피해를 입은자가 중·고선을 구입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톤수는 신통수를 적용하고 구톤수는 신통수로 환산 ※ 신통수 = 구톤수×0.72 ○ 동력,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톤수, 척수조사 ○ FRP, 목선, 강선, 알루미늄선으로 구분하되, FRP를 피복한 경우에는 목선, 강선 및 알루미늄선으로 조사 ○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을 기재하고 선박대장을 첨부 ○ 유실·침몰된 어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시 해경 경위 조치 ○ 전파 : 어선의 용골 등 선체가 손상·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완전히 소실되어 새로 건조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다만, 침몰·유실의 경우에는 어선의 형태가 확인되어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하다면 반파로 함 ○ 반파 : 어선의 용골 등 선체가 손상·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파·반파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음 ○ 피해액 산정 - 피해어선톤수(신통수)×어선종류별 톤당 지원단가(반파는 1/2적용) ○ 금번 피해 어선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폐선인지 확인 조사 ※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공해상에서 어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피해 보고는 관할 해양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보고하고 선적지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 피해 발생 시·군은 피해장소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시·군으로 할 것 · 복구계획은 어선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인명피해(선원)는 주소지 시·도지사가 수립 보고	하거나 반파 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부 담 륜 - 40톤미만어선 : 지원 35%,용자 55%, 자부담 10% -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 : 용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허가·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어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당해연도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 ○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 조	○ 재난지수 산정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어망·어구 종류별 지원가격 6천만원 미만 복구계획서 작성 ○ 어망·어구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복구계획 수립보고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사 ○ 피해액 산정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 (반과는 1/2적용) ※ 반파: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수리 하면 어업이 가능한 상태로써 전체 시설 대비 백분율로 판단 ○ 면허·허가·신고대상상의 위치, 시설종류, 시설규모와 일치하는지 조사 ○ 양식업자와 피해 어업인 일치여부 확인 ○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가 맞는지 확인 ○ 당해연도 설치한 자재인지 확인	○ 부 담 른 -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건조가격 6천만원이상 : 용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바. 수산물 증·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1)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양식업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양식업허가·면허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양식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양식 시설별 양식업자와 피해 어업인의 일치여부 확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양식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과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 하고 행사자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어구와 같음 ※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 (단위 : %) <table><tr><td>구분</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tr><td>김</td><td>75</td><td>67</td><td>58</td><td>50</td><td></td><td></td><td></td><td></td><td>50</td><td>100</td><td>92</td><td>83</td></tr><tr><td>미역</td><td>88</td><td>76</td><td>63</td><td>50</td><td></td><td></td><td></td><td></td><td></td><td></td><td>100</td><td>100</td></tr><tr><td>다시마</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0</td><td>70</td><td>50</td><td>40</td><td>30</td><td>20</td><td>100</td><td>100</td></tr></tabl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 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복구가 가능함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참고 ○ 부 담 른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2) 수산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	○ 재난지수 산정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증·양식 부대시설 의 파손·유실	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양식업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양식업 면허, 시설의 허가·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양식업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 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 ○ 지원 세부기준 - 실제 사용 시설에 한하여 조사하고, 금번 피해 시설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시설인지 확인 - 수산물 증·양식시설과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수산생물에 대해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산물 증·양식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부 담 른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 수산증·양식시설 면허·허가대장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 신고서 및 증명서류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후 조치 - 입식 판매량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고 가능 ○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 확인,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 ○ 피해 해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표준사육기준 : 해상가두리> * 기준 : 가두리 가로5m×세로5m×깊이5m/대 (cm, g)	○ 재난지수 산정 - 생물종류별 지원기준지수×피해수량 ○ 지원기준지수 - 패류, 해조류, 기타류: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어류 : 치어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1/2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어장의 환경변화로 피해재발 소지가 있거나 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 사유로 피해어종의 입식이 불가할 때에는 복구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어종으로 대체 입식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 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 단가 산정 시 성어는 성어의 1/2값을, 중간어·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부 담 른 - 지원 50%, 용자 30%, 자부담 2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어종별	치 어		중간어		성 어				
		크기 (미만)	소요 기간	최대 수용마리수	범위	최대 수용마리수	크기 (체중) (이상)	소요 기간	최대 수용마리수		
		조피볼락·농어	13		16,300		10,500	26(350)		4,800	
		참돔·감성돔	13		14,100		9,100	26(350)		4,200	
		돌돔	10		14,100		9,400	20(200)	16개월	4,000	
		민어·농성어	15	입식후 3개월이	20,000		12,000	30(500)	이상	4,000	
		볼락	8	3개월이	25,000		20,000	16(150)		15,000	
		방어	10	내	25,000	치어 (치패)	13,000	20(200)	(단,방어4 넙치,	5,000	
		송어	15	(단,방어 2개월)	15,000		10,500	30(500)	넙치, 노래미·	6,200	
		넙치	15		20,000		6,000	30(500)	고등어·	2,000	
		귀치	10		14,000	성어 (성패)	8,400	20(130)	전갱이	4,000	
		황복	10		20,000		12,000	20(250)	12개월))	5,000	
		노래미· 고등어· 전갱이	13		15,000		10,000	26(200)		5,000	
		※ 어류 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치어에 한하여 7m까지 적용 환산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									
○ 피해 내수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로 성어 및 치어로 구분 조사											
<내수면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cm)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30	500	14							
잉	어	32	1000	22							
뽕	장 어	25	200	16							
향	어	30	1000	22							
가	물 치	45	2000	36							
메	기	20	200	5							
틸	라 피 아	22	1000	14							
은	어	22	50	5							
미	꾸 리	11	10	14							
자	라	13	500	15							
산	천 어	25	250	12							
※ 큰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피해액 산정 : 피해물량×수산생물별 입식비											
○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											

사. 염전 복구		
(1) 염전	○ 재난으로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전을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 매몰면적 : 매몰심도를 10cm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유실면적 : 유실깊이를 20cm로 기준하	○ 유실 및 매몰비 지원 기준 : 농경지 복구기준에 의하여 지원 ○ 부 담 른 - 지원 60%, 용자 30%,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한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대상 제외 •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염전을 가동 하지 않은 염전 •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2) 염생산 저장창고	○ 염생산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부 담 른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아. 기타(공장, 광산 등) 복구		
	○ 공장, 광산(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 -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 후 현지 확인 -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기금 또는 용자로 지원하되 부담률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함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시·도에서 지원
자. 기타 적용		
	○ 동 훈령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공공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일반 공통사항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 후 시설 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 하천 내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이 감소한 경우 퇴적토량을 계상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등」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 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필요시 드론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피해 조사 등에 활용 가능 ○ 공사 하자기간 내 시설물은 부설시공으로 인한 하자 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 결정 ○ 피해 현지조사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여 사전에 별도 작성 비치 ○ 피해액 선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국고 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도서지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운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제1항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복구비 산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6장 안전점검 등의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시설물 규모에 따른 직선보간법, 견적 등을 활용하여 산정 ○ 하상 퇴적 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준설비 계상 ○ 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 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계획이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개선복구계획 수립 대상 > ①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②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④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⑥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에서 결정된 시설 등 <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 대상 > ①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②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 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③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④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 개선복구·지구단위종합복구 대상지구는 별도 설명 자료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참조 ○ 복구공법 선정은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경제성 및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국가관리 공공시설중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지구는 다음연도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처에서 다음연도에 별도지원 대책 강구 ○ 재원부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국가관리 공공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 공공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기타 공공시설 · 소규모시설, 시 관내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외) : 지방비 100% · 농림축산식품부관리 수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한국농어촌공사시설, 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유림 : 국고 50%, 지방비 50% · 수산시설 : 국고 50%, 용자 50% ·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국고 100% · 사립대학교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사설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복구금액이 “0”인 시설은 피해금액도 “0”으로 본다 ○ 복구비 산정 - 복구물량×시설공종별 단가 - 기준단가는 자연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기준에 없는 공종은 우선 유사 공종을 적용하고 그 다음 물가정보나 설계 및 견적 가격을 적용 - 개선복구계획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상,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토지보상비 산정은 지역별 공시지가에 지역별 공시지가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정 -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및 공사 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선복구·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이 아니더라도 피해 시설별·지역별로 설계·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지원 ※ 용역비 적용요율 : 당해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소규모시설 단가 적용 시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가) 토지보상비 산정 방법		
○ 지역별, 용도지역·이용상황 보상배율을 적용한 보상비 산정(「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 배율 개정 연구」(2021, 기획재정부) - 산식 : 복구사업 편입 면적(㎡) × 대상 필지 공시지가(원/㎡) × 지역별 공시지가 보상배율* * 48개 권역별 공시지가 기반 보상배율 ※ 공시지가의 경우 인접 3필지 평균지가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시도	분류 코드	시군구명	시군구수	요율
서울 (5)	11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5	1.46
	112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6	1.44
	113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5	1.50
	114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	1.77
	115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2.30
부산 (4)	261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5	1.92
	262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5	1.77
	263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3	2.18
	264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	2.51
대구 (3)	271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5	2.00
	272	동구, 북구	2	1.96
	273	달성군	1	2.86
인천 (3)	281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5	1.49
	282	부평구, 계양구, 서구	3	1.80
	283	강화군, 옹진군	2	2.76
광주 (2)	291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	2.30
	292	광산구	1	2.13
대전 (2)	301	동구, 중구	2	1.69
	302	서구, 유성구, 대덕구	3	1.95
울산 (2)	311	중구, 남구, 동구	3	2.24
	312	북구, 울주군	2	2.39
세종 (1)	361	세종	1	2.76
경기 (5)	411	수원장안구, 수원권선구, 수원팔달구, 수원영통구,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성남분당구, 안양만안구, 안양동안구,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기흥구, 용인수지구	14	1.83
	412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덕양구,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1	2.14
	413	부천시, 광명시, 안산상록구, 안산단원구, 시흥시, 김포시	6	1.99
	414	평택시, 오산시, 용인처인구, 안성시, 화성시	5	2.36
	415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가평군, 연천군	5	2.33
강원 (3)	421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6	2.69
	422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6	2.66
	423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6	2.63
충북 (3)	431	청주상당구, 청주서원구, 청주흥덕구, 청주청원구	4	2.22
	432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3	2.80
	433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7	2.56
충남 (3)	441	천안동남구, 천안서북구, 공주시, 아산시, 예산군	5	2.48
	442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6	2.40
	443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5	2.64
전북 (2)	451	전주완산구, 전주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6	2.43
	452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9	2.57
전남 (3)	461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7	2.78
	462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6	2.93
	463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9	2.96
경북 (3)	471	포항남구, 포항북구,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6	2.55
	472	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5	2.56
	473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3	3.05
경남 (3)	481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합포구, 창원회원구, 창원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7	2.28
	482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9	2.98
	483	밀양시,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6	3.04
제주 (1)	501	제주시, 서귀포시	2	3.88

나. 부처별 시설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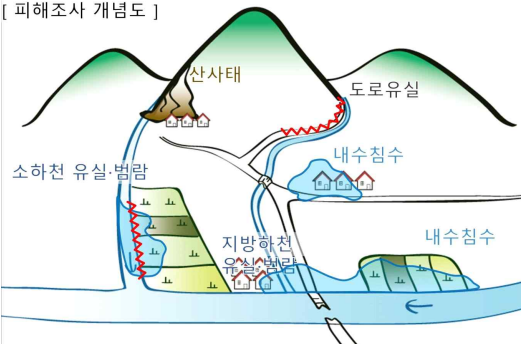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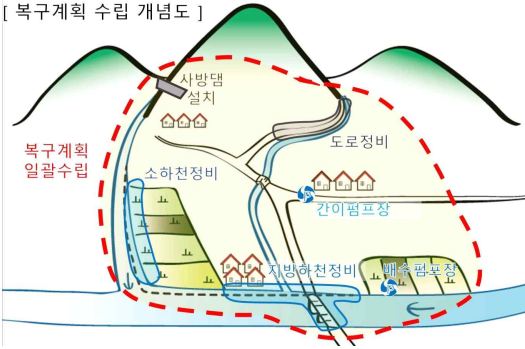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시설

(1) 수리시설	○ 수리시설 대상 : 저수지, 용·배수로, 방조제, 취입보, 양·배수장 등 수리 시설물관리대장에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관리청별 구분조사(국가, 지방)	○ 복구비 산정 - 세부공종별 복구물량×기준단가 ○ 양배수장 침수로 인한 전기, 기계류 피
----------	--	--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농업용이 아닌 취입보, 도시배수펌프장, 하천 배수문은 제외 ○ 시설 방조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액은 세부공종별 피해물량을 산정하여 공종별 기준단가를 적용산정	해복구비는 수리비만 산정하여 복구계획 수립 ○ 부담률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나) 해양수산부 소관시설		
(1) 어항시설	○ 어항시설의 방파제 물양장 등 부대시설 대상 ○ 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법정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로 구분 조사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지방어항 : 연안어업 자원의 근거지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어항으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 소규모 항포구 : 법정어항을 제외한 마을 단위로 이용하는 항포구 ○ 시설물 점검 이력대장, 어항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표지시설, 도선장, 물양장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 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 복구비 산정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국가어항)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국고 50%, 지방비 50% ※ 자치단체관리 소규모 항포구 : 지방비 100%
(2) 항만시설	○ 「항만법」상 지정항만 내 항만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시설물 대상으로 조사 ○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 조사 - 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 :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	○ 전국 항만 기본계획(무역항, 연안항)이 수립된 지구는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하여 복구비 산정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무역항, 연안항) : 국고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항만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및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호안, 안벽, 물양장, 표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 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다) 국토교통부 소관시설		
(1) 도로시설	○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국도 및 도로 표지판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단순 균열피해는 제외 ○ 노후 교량은 급회 피해 진위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교량은 피해 경간 및 교각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전체를 계상하지 말 것 - 적용단가 중 피해규격과 다른 경우는 m² 등으로 가감 환산 적용하여 산정	○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량의 경우 노폭, 교량폭, 가설연도, 재해재발 여부, 주민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도로 포장공법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되, 복구비가 저렴한 공법 선택 ○ 부담률 -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 국고 100% <주의사항>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농복합형 도시 중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군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함
(2) 철도시설	○ 「철도법」에 의하여 설치된 궤도, 도상, 독, 노반 등과 그 부대시설 ○ 선로평면도, 공사대장, 교량카드 등을 참조 조사 ○ 철도공단 관리시설 피해만 선별, 위치, 연장을 측정하고 피해 종류별로 수량 산출	○ 복구계획은 시설피해에 한하여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사업성 복구비는 철도공사 자체예산에 편성 시행 ○ 부담률 - 국가관리 : 국고 100% - 지방관리 : 국고 50%, 지방비 50%
라) 행정안전부 소관 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1) 도로시설	○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도로 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산정 -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군도 : 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 : 지방비 100% • 광역시의 구 및 일반시 관내 동 지역의 도로는 등급에 관계없이 지방비 100%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시도는 국고 50%, 지방비 50%
(2) 농어촌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공고된 도로를 대상 ○ 국토교통부 도로피해 조사와 같음 ※ 피해 보고 시는 행정안전부 도로에 포함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3) 자전거 도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한 도로를 대상 ※ 하천 부지 내 시설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됨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4) 소하천	○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소하천의 제방, 수문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낙차공, 소규모 간이취입보도 포함	○ 호안은 자연친화형 공법을 적용 ○ 하폭이 협소한 곳은 가능한 자연 상태로 두고 인접 토지 매입방법을 강구하여 복구계획 수립 ○ 옹벽, 찰쌓기 호안은 피하고 자연 친화형 하천이 되도록 계획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5) 지방관리 공공건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유 · 미 가입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 사유임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 시설은 조사	○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시설은 지원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6) 지구단위 종합복구 시설	○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복구계획 수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 후 피해시설별로 조사하고 하나의 재해대장에 통합하여 작성	○ 대상지 선정 방법 -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 피해유형, 수계·유역, 임야(능선)·하천·도로, 행정구역 등 감안하여 지구경계 설정 - 도로·하천 등 피해시설별 소관 부처가 상이하더라도, 일괄 복구를 위해 시설물 간 연계성, 방재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구계획 수립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피해조사 개념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시 피해액 산정은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함	[복구계획 수립 개념도]  ○ 수립대상 -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 ○ 수립방법 -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서 작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요청기간 -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를 거쳐 복구계획 심의·확정 전까지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 수리시설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이 포함될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 적용
(7) 소규모 공공시설	○ 대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준용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복구계획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개선복구계획 수립 ○ 부담률 - 지방비 100%
(8) 기타 소규모 시설	○ 대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을 제외한 비법정 소하천, 농로, 소교량, 기타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준용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복구계획수립 ○ 부담률 - 지방비 100%
마) 환경부 소관시설		
(1) 상하수도	○ 상·하수도시설, 하수·폐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조사 ○ 인가대장, 관리대장,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조사	○ 하수도의 토사유입 매몰에 따른 준설 피해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취수시설, 취수장, 관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부대시설별로 피해물량과 금액을 산정하되, 전기·기계시설은 수리비만 계상 ○ 홍수통제소에서 설치한 수위·우량관측시설 피해액 산정은 설치 당시 사업비를 기준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광역상수도 : 국고 100% - 수위·우량관측시설 : 국고 100%
(2) 공원시설	○ 국립·시도립공원 구역 내의 피해시설 대상 ○ 국립공원 시설피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 조사 ※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 설치·관리 지역과 일반 산림 지역의 산사태 구분 조사	○ 부담률 - 국립공원 : 국고 100% - 시·도립공원 : 국고 50%, 지방비 50%
(3) 하천시설	○ 국가·지방하천별로 조사 ○ 제방 축제·호안·수문 등 하천 기본시설 부속물 전체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조사 ○ 하천 친수시설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한 친수시설에 한하여 피해 조사 ※ 친수시설 :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연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 하천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시설은 피해조사 제외 ○ 국가하천과 접한 하천의 제방은 국가하천으로 함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 등 매입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산정 -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내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 시는 전체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확폭으로 인한 용지매수 필요 시 용지매입비를 계상 - 이수·치수기능과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보상비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우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을 수립 ○ 실매입비계상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국고 50%, 지방비 50% ○ 부담률 <하천·제방·수문 등 하천 기본시설>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국고 50%, 지방비 50% <친수시설>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지방비 100% ※ 국가하천 친수시설 중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자체에서 유지관리하는 친수시설은 국가관리에 해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바) 교육부 소관시설		
	○ 부속건물, 관사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 건축물 관리대장, 학교시설 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조사 ○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구분 조사	○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제외하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부담률 -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국고 100% - 사립대학교 : 지방비 50%, 자부담 50%
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 하천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공원내 간이 체육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는 피해액 등을 토대로 산정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아) 국가유산청 소관시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동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 피해 시설도 포함하여 조사 ○ 피해시설의 위치와 국가유산의 명칭 및 관리등급별(국가·지방)로 조사 ○ 피해액 산정은 기준단가로 산정하되,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은 국가유산청 표준설계 금액을 적용	○ 국가유산이 멸실되었거나 붕괴되어 복구가 필요 없을 경우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는 피해액 등을 토대로 산정 ○ 부담률 - 국가지정유산 : 국고100% - 시·도지정유산 : 국고 50%, 지방비 50%
자) 산림청 소관시설		
	○ 국·공·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조사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시설, 수목원시설, 정원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공원시설 설치·관리 지역 외 일반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의 피해 ※ 자연공원 내의 시설·문화재·군사시설 등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복구 주관부처를 결정할 것 ○ 피해액 산정은 피해물량(ha, km, 개소, 본 등)×기준단가로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기	○ 복구비는 피해액 등을 토대로 산정 ※ 산간오지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재산 등의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선복구비를 적용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시설 : 지방비 100% ※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에 대한 복구비 산정 시 지방비 100%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재할 필요 없음 ○ 피해지 하부 계류의 피해상태를 조사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의 시설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 조치 ○ 산림 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하되, 시설 배치도를 참조하여 시설물 별 피해 정도를 조사할 것 ○ 피해 가로수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수를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수×기준단가로 표시	*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 숲길,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지방정원 등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시설 부담률 적용
차) 부처별 기타시설		
	○ 세부공 종별 피해액을 산정 ○ 관공서 건물 등은 소관 부처별로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시설로 구분 조사 ○ 공설 장사시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구분 조사 ※ 사설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피해조사 ※ 다만, 부속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나,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은 조사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 관광안내표지판, 「전통사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일반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지정 해수욕장 : 문화체육관광부 ○ 공설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유산 등록 사찰 : 국가유산청 ○ 도시배수펌프장, 지자체 수위 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등 : 행정안전부 ○ 공공 도축장 : 농림축산식품부 ○ 경찰서건물, 경비초소등 경찰시설 : 경찰청 ○ 탄약, 장비 등 물자를 제외한 군사시설 : 국방부 ○ 기타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시설은 “행정안전부소관 기타”로 할 것 ○ 피해액 산정은 유사공종을 적용하되, 없는 공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견적 및	○ 국가 소유의 공공건물 피해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했을 경우라도 보험금이 국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그 피해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복구계획에 반영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설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 운영) : 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설계단가 적용 ○ 사설 장사시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이윤 목적 시설은 조사 제외	
다.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가뭄대책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복합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의 가뭄대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가뭄대책 사항	○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치 ○ 부담액 : 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 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2) 쓰레기 처리비용	○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2차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중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로 실제 처리 비용을 조사	○ 관계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거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담률 - 국고 100% ○ 소 관 - 육상쓰레기 : 환경부 - 해양쓰레기 : 해양수산부
(3) 제설비용	○ 제설비용으로 소모되는 자재대 및 장비비 조사 ※ 사유시설 제설비용 제외	○ 제설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자재대 및 장비비 비용 확인 ※ 견적 등 증명자료 확인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4) 수전설비 교체비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공동주택 수전설비 조사	○ 수전설비 교체·수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설치비 일부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그 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기금 등으로 지원	○ 부담률 - 국비 100%